

의안번호	2213128
의 퇴 인	추경호의원
회 답 일	2025.7.22.
추계번호	25E34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기 ISA 잔액 연금계좌 전환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3제4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계약기간이 종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적용 - (추가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 그 외 12% [일반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과 동일] - (추가 세액공제 한도) (현행) Min(전환금액의 10%, 300만원) (개정안) Min(전환금액의 10%, 600만원)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9조의3제4항(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과 같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의 연금계좌 전환 시 적용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추가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만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한도) 납입액 기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900만원
 - (만기 ISA 특례) 계약기간이 종료된 ISA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이체)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

세액공제 적용

- (만기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과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
- 개정안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ISA 잔고의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를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ISA 만기 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인원 및 금액, 해당 인원의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수준, 연금계좌세액공제 현황 및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 초과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의 미비로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3년 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준, ISA 만기에 따라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인원의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일반 연금계좌세액공제 + 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은 다음과 같음

[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 2023년, 근로소득자 대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계약만기 ISA 잔액 연금계좌 이전 인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¹⁾		
	인원	공제대상 금액	공제액	인원	공제대상 금액	공제액
결정세액이 있는 자	2,605,630	10,223,301	1,263,376	4,237	12,309	1,585
1천만 이하	3	1	0	0	0	0
15천만 이하	40	8	1	0	0	0
2천만 이하	917	217	32	3	0	0
3천만 이하	31,501	21,963	3,294	156	103	15
4천만 이하	126,066	200,673	30,099	463	735	110
45천만 이하	106,590	253,580	38,036	321	836	125
5천만 이하	127,573	343,490	51,522	337	976	146
55천만이하	138,501	399,770	59,963	308	970	146
6천만 이하	151,918	476,055	57,126	282	809	97
8천만 이하	591,076	2,063,523	247,621	841	2,633	316
1억 이하	498,465	2,049,577	245,949	508	1,480	178
2억 이하	736,657	3,792,285	455,072	812	2,859	343
3억 이하	64,656	411,556	49,387	118	489	59
5억 이하	22,034	143,628	17,235	56	260	31
10억 이하	7,620	52,712	6,325	26	118	14
10억 초과	2,013	14,264	1,712	6	40	5

주: 1) 계약만기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인원의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 2023년, 종합소득자 대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계약만기 ISA 잔액 연금계좌 이전 인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¹⁾		
	인원	공제대상 금액	공제액	인원	공제대상 금액	공제액
결정세액이 있는 자	1,077,090	4,452,187	560,449	16,909	61,927	8,022
0 이하	4	44	2	0	—	—
1천만이하	21,125	15,792	2,254	306	237	35
2천만이하	75,007	109,109	16,014	1,649	2,412	358
3.5천만이하	171,773	469,995	69,557	3,552	10,502	1,566
4천만이하	57,891	200,804	29,757	1,136	4,004	597
4.5천만이하	54,354	197,360	28,564	895	3,344	496
5천만이하	49,861	188,438	22,552	811	3,227	387
6천만이하	90,954	363,325	43,468	1,336	5,384	647
8천만이하	147,576	639,463	76,580	1,986	8,298	996
1억이하	104,359	504,688	60,456	1,211	5,311	637
2억이하	202,944	1,120,169	134,221	2,470	11,397	1,367
3억이하	47,713	294,439	35,274	713	3,470	416
5억이하	30,418	193,364	23,157	487	2,384	286
7억이하	10,364	68,574	8,214	185	972	117
10억이하	6,172	41,453	4,967	90	486	58
10억초과	6,575	45,169	5,411	82	499	60

주: 1) 계약만기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인원의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